

# 예산총칙

202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88,381,407	26,651,442
일반회계	866,582,902	25,997,487
특별회계	21,798,505	653,955
공기업특별회계	10,686,498	320,595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0,686,498	320,595
기타특별회계	11,112,007	333,360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70,050	2,10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08,401	33,252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0,000	1,200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1,600	948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684,660	20,540
수질개선 특별회계	7,687,296	230,619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1,490,000	44,7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248,32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2,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